



교육감 규정

번호: D-140

제목: 공석 충원을 포함한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선출 절차

항목: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CEC)

발행: 2022년 12월 22일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은 2021년 4월 29일자 교육감 규정 D-140을 갱신하고 대체합니다.

변경 내용:

-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2022년 개정된 뉴욕주 교육법에 맞게 본 규정 전반에 걸쳐 다수의 조항을 갱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또는 지난 2년 사이 75학군 학교나 프로그램에 재학한 자녀를 둔 학부모를 신규 투표권자로 추가하고 투표권이 없는 두 번째 학생 멤버를 추가하는 것 등입니다.
- 75학군 및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신규 투표권을 갖는 위원의 선출 절차 및 해당 직위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충원 절차를 수립합니다(섹션 V, IX).



교육감 규정

번호: D-140

제목: 공석 충원을 포함한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선출 절차

항목: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CEC)

발행: 2022년 12월 22일

요약

본 규정은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CEC) 위원 자격 요건, 입후보 및 선출/선거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공석 충원 절차를 안내합니다.

I. 구성

모든 커뮤니티 학교 학군은 반드시 12명의 투표 위원과 2명의 비투표 학생 위원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CEC)를 운영해야 합니다. 9명의 투표 위원은 본 규정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선출되며 반드시 선거 시점을 기준으로 커뮤니티 학교 학군 내의 학교에서 유치원-8학년 재학생, Pre-K 프로그램 재학생, 커뮤니티 학교 학군 관할 학교나 pre-K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여야 합니다. 열 번째 투표 위원은 본 규정에 수립된 절차에 따라 선출되어야 하며, 반드시 선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CEC의 지리적 학군 내 있는 75학군 학교나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여야 합니다. 나머지 2명의 투표 위원은 보로장이 임명합니다. 학생 위원들은 커뮤니티 수퍼인텐던트가 임명합니다.

II. 자격요건

A. 학부모

1. CEC에서 봉사하는 9명의 학부모 위원은 학교나 관할 학군 내 학교에서 제공하는 pre-K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 또는 그 이전 2년 사이 이러한 학교나 pre-K 프로그램에 다녔던 학생의 부모여야 합니다.
2. 학부모 위원 1명은 반드시 해당 CEC의 지리적 학군 내 위치한 75학군 학교나 프로그램에 재학 중이거나 지난 2년 사이 재학하였던 학생의 부모여야 합니다.

3. 학부모란 부모(출산 또는 입양, 의붓 부모 또는 양부모로서), 법률적인 보호자 또는 아이와 부모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으로 정의합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대신에 정기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관리할 직접적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4. 커뮤니티 스쿨 학군에서 제공하는 학교나 pre-K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유치원-8학년 또는 Pre-K 학생의 학부모는 누구나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 학교 학군의 CEC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5. 해당 CEC의 지리적 학군에 위치한 75학군 학교나 프로그램 재학생 부모는 누구나 75학군 학교 또는 프로그램 부모를 위해 할당된 CEC 위원직("75학군 할당 의석") 후보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 6 후보 자격은 CEC 후보 출마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7. 지원서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이 되는 K-8학년 학부모는 선출될 경우 2년 임기로 CEC에서 활동하게 되며, 자녀가 임기 도중 8학년을 졸업 및/또는 커뮤니티 학교 학군 관할 학교에 더 이상 재학하지 않을 경우에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8. 지원서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이 되는 75학군 학교나 프로그램 학부모는 선출된 경우 CEC에서 2년 임기로 봉사하게 되며, 임기 중 자녀가 해당 CEC의 지리적 학군 내 위치한 75학군 학교나 프로그램에 더 이상 다니지 않는다 해도 임기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9. 지원서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Pre-K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는, 같은 커뮤니티 학교 학군 관할 학교에서 제공하는 pre-K 프로그램이나 학교에 자녀가 더 이상 다니지 않는다면 봉사 자격을 상실합니다.
10. 학부모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B. 보로장 임명인

1. 보로장이 임명한 2명의 위원은 반드시 학군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체를 소유 또는 운영하고 비즈니스, 사업 또는 교육 경험 및 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에 제한이 없습니다.
2. 보로장 임명 CEC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청 가정 및 커뮤니티 역량강화실("FACE")에서 지원서를 받아 작성한 후 FACE에 이메일 ccecinfo@schools.nyc.gov로 제출하면 됩니다. FACE에서 자격을 검토한 후 요건을 갖춘 후보의 지원서를 보로장실로 보낼 것입니다. 최종 임명은 보로장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C. 학생 위원(투표권 없음)

1. 봉사하는 학년도에 12학년에 재학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커뮤니티 학교 학군에 거주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학생회에 선출된 고등학교 학생은 커뮤니티 수퍼인텐던트의 임명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학생은 봉사하고자 하는 커뮤니티 학교 학군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출된 학생회에 12학년 학생이 없을 경우 기타 선출을 통한 리더십 직위(클럽 회장 등)를 수행하는 12학년 학생이 고려됩니다. 본 규정에서는 30학점의 고등학교 학점을 이수한 학생을 시니어(12학년)로 간주합니다.
2. 관심 있는 학생은 반드시 FACE에서 지원서를 받아 작성한 후 FACE에 이메일 cceinfo@schools.nyc.gov로 제출 하십시오. FACE에서 자격을 검토한 후 요건을 갖춘 후보의 지원서를 해당 커뮤니티 학군 수퍼인텐던트에게 보낼 것입니다. 모든 임명은 수퍼인텐던트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3. 투표권이 없는 학생 위원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 1년입니다.

D. 지원 자격이 없는 사람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 a. 선출직 공무원이나 정당의 선출 또는 임명 보직(전국, 주, 법원 또는 기타 정당 협의회의 의원 또는 대의원, 카운티 위원회 위원은 제외)에 있는 사람
 - b. 현 뉴욕시 교육청("DOE") 직원
 - c. 다른 CEC 또는 뉴욕시 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사람
 - d. 교육 정책 패널 위원
 - e. 학부모회 또는 학부모 교사회(PA/PTA), 학교 리더십 팀, 회장 위원회, 보로 고등학교 위원회, 또는 타이틀 I 위원회 등에서, 해당 협회, 팀, 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불미스러운 행위로 제명당한 사람
 - f. 교육청 윤리 담당관 또는 기타 교육감이 지정한 대리인에 의해 뉴욕시 이해관계 상충 법에 의거,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2. 다음의 경우는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a. CEC 또는 뉴욕시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정 행위에 가담한 자
- b. 뉴욕주 교정법 제23-A항에 의거, 고려될 수 있는 제공된 유죄 범죄 판결을 받은 자

III. CEC 선거 출마

- A. FACE는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1월부터 지원서 제출과 투표 타임라인을 포함한 선거 절차를 발표할 것입니다.
- B. CEC에서 봉사하는 것에 관심있는 학부모님들은 뉴욕시 학교 계정("NYCSA") 지원서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십시오.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학부모님들은 학부모 코디네이터 또는 교장에게 학교나 학군 오피스 컴퓨터 사용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으며, 전화 311로 문의하시면 공립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안내할 것입니다.
- C. 후보들은 지원서에서 교육청 학교에 재학 중인 본인의 모든 자녀들을 본인의 NYCSA 계정에 링크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CEC에 지원하는 후보는 자녀가 현재 재학 중인 커뮤니티 학교 학군 관할 하의 각 학교의 대표로 간주됩니다. D75학군 할당 의석에 지원하는 후보는 자녀가 현재 재학 중인 지리적 학군이 있는 CEC의 각 75학군 학교 또는 프로그램 대표로 고려될 것입니다. 후보자가 대표할 학교 관련 정보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자격박탈 사유가 됩니다.
- D. 후보는 자격이 되는 모든 학군 및/또는 뉴욕시 교육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으나, 선출될 경우 오직 한 곳에서만 봉사해야 합니다. 다수의 위원회에 지원하고자 하는 후보는 선호도에 따라 각 위원회의 순위를 매겨야 합니다. 한 곳 이상의 교육 위원회에 선출될 경우, 가장 높은 순위로 기재한 교육 위원회에 임명됩니다.
- E. CEC의 최소 1석은 반드시 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현재 가지고 있거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학생의 학부모("IEP 학부모")로 채워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고려되고자 하는 후보는 반드시 본인이 IEP 학부모라는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 F. CEC의 최소 1석은 반드시 현재 영어 학습 학생이거나 이전에 영어 학습 학생이었던 학생의 학부모("ELL" 학부모)로 채워야 합니다. 영어 학습 학생이란 가정 언어가 영어가 아닌 학생으로 영어를 배우는 데 지원이 필요하여 이원언어, 전환적 이중언어 교육 또는 새로운 언어로서의 영어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을 말합니다. CEC에서 ELL 학부모로 봉사하고자 하는

후보는 반드시 지원서에 본인이 ELL 학부모라는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IV. 후보 포럼

- A. 각 커뮤니티 학교 학군에서는 회장 위원회는 FACE와 협력하고 지원을 받아 후보 포럼을 개최하여 후보들이 학부모 및 기타 관심 있는 대중에게 본인을 소개할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 B. 75 학군 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 포럼은 별도로 개최될 수 있습니다.
- C. 후보자 포럼은 반드시 지원서 제출 마감일이 지난 후, 그러나 선거 기간 전에 실시되며, 이 선거 기간은 반드시 선거가 있는 해의 5월 두 번째 화요일까지 종료되어야 합니다.
- D. 후보 포럼은 물리적 공간에서 실시되거나 온라인 회의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장 위원회는 FACE와 협의하여 후보 포럼 날짜와 시간, 형식을 결정할 것입니다. 대면 포럼이 실시될 경우, FACE에서는 장애인 접근이 편리한 ADA 준수 장소를 확보하고, 교육청 장소들에 대한 모든 필요 허가를 획득 및 관련 비용을 책임질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포럼이 실시될 경우, FACE에서는 해당 플랫폼 비용을 지불하고 회의 중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 E. 각 후보 포럼에 앞서 FACE에서는 각 후보들의 지원서에서 성명, 자녀(들)의 학교(들) 및 프로그램들, 그리고 후보 성명서 등의 부분(일명 "후보 프로필")을 일반이 볼 수 있게 준비할 것입니다. 후보 프로필은 학부모님들과 일반 대중이 볼 수 있게 교육청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FACE에서는 또한 대면으로 실시되는 후보 포럼에서 후보 프로필 사본을 배부할 것입니다.

V. 선거 절차

- A. 투표권자
 - 1. 커뮤니티 학교 학군에서 제공하는 학교나 pre-K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유치원-8학년 또는 Pre-K 학생의 학부모는 누구나 해당 학군의 CEC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 2. CEC의 지리적 학군 내 위치한 75학군 학교나 프로그램 학부모는 75학군 할당 의석 선출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 3. 유자격 학생 1인당 3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 B. 투표
 - 1. 학부모님들은 NYCSA를 통해 온라인으로 투표하실 것이 권장됩니다.

2.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학부모님들은 학부모 코디네이터 또는 교장에게 학교나 학군 오피스 컴퓨터를 사용해 NYCSA 계정을 만들고 투표할 수 있게 주선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으며, 전화 311로 문의하시면 공립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안내할 것입니다.
3. 또한 수퍼인텐던트 사무실에는 종이로 된 투표용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퍼인텐던트 사무실에서 학부모를 대신하여 NYCSA 계정을 만들어 학부모의 투표를 입력한다면, 수퍼인텐던트 오피스에서는 반드시 학부모가 선택한 후보가 표시된 종이 투표용지(들)의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수퍼인텐던트 오피스가 학부모 대신 NYCSA 계정을 만들어 투표용지의 내용을 입력하는데 동의한다는 동의서, 그리고 수퍼인텐던트 오피스가 학부모를 대신하여 학부모의 투표를 입력하였다는 인증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C. 취임하는 후보들

1. 커뮤니티 학교 학군 관할 학교나 pre-K 프로그램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 자격으로 선출된 9명의 CEC 위원 중 최소 한 명은 IEP 학부모, 또 다른 최소 한 명은 ELL 학부모여야 합니다. 나머지 7석은 기타 자격요건을 갖춘 학부모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모든 의석 및/또는 IEP 학부모 및 ELL 학부모 의석을 채우기 위한 필요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CEC에 한 학교 당 1명 이상의 대표를 둘 수 없습니다. 투표 결과를 기록할 때:
 - a.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7명의 후보가 조건부로 의석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9명의 후보 중 같은 학교에서 한 명 이상이 있을 때에는 득표가 더 많은 후보가 위원으로 선택되며, 동일 학교에서 득표가 적은 후보가 탈락됩니다. 그리고 CEC에 아직 대표를 보내지 못한 다른 학교를 대표하는 그 다음 득표 후보가 조건부로 선출될 것입니다.
 - b. IEP 학부모 및 ELL 학부모가 같은 학교의 후보를 제외한 후 조건부 선출된 7명 중에 속한다면 이미 조건부 선출된 7명의 후보와 같은 학교가 아닌 후보 중 다음으로 가장 많은 표를 득표한 2명의 후보가 CEC의 남은 2석을 충원하기 위해 조건부 선출됩니다.
 - c. IEP 학부모 및/또는 ELL 학부모가 같은 학교의 후보를 제외한 후 조건부 선출된 7명 중에 속하지 않는다면 가장 많은 표를 득표한 IEP 학부모 및/또는 ELL 학부모가 조건부 선출됩니다. 이 IEP 학부모 및/또는 ELL 학부모가 이미 선출된 후보와 같은 학교를 대표하고 CEC에 이미 대표되지 않은 학교의 다른 IEP 학부모 및/또는 ELL 학부모가 있다면 이미 CEC에 대표를 보유하지 못한 학교에 소속된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표를 득표한 IEP 학부모 및/또는 ELL 학부모가 조건부 선출됩니다.

- d. IEP 학부모이자 ELL 학부모인 후보는 CEC 모든 의석이 충원될 수 있도록 IEP 의석과 ELL 의석 중 공석인 곳을 충원해야 합니다.
2. 75학군 할당 의석 투표는 별도로 집계되며, 최다득표한 후보가 해당 의석을 충원하도록 조건부 선출됩니다. 커뮤니티 학군 학교 관할 학교 대표로도 조건부 선출되고 75학군 할당 의석에도 조건부로 선출된 후보는 75학군 할당 의석에 배정될 것입니다.

D. 재투표

1. 재투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치러집니다:
 - a. 두 명 또는 다수 후보의 득표가 동일한 경우
 - b. IEP 학부모 및/또는 ELL 학부모, 또는 75학군 할당 의석에 아무도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 c. 각기 다른 학교 선출된 후보들로 CEC를 구성하고도 완전히 충원되지 않았을 경우
2. 두 명, 또는 다수의 후보가 동일 득표를 한 경우, 동일 득표한 후보들로만 재투표를 실시합니다.
3. 득표한 IEP 학부모가 없어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IEP 학부모인 후보들만 IEP 위원 자리를 놓고 재투표에 참여합니다. 득표한 ELL 학부모가 없어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ELL 학부모인 후보들만 IEP 위원 자리를 놓고 재투표에 참여합니다.
4. 이미 CEC에 대표를 낸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가진 후보를 제외한 후에도 하나 이상의 공석이 남아있거나 IEP 학부모나 ELL 학부모가 충원되지 않아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아직 조건부로 선출되지 않았고 이미 대표를 내지 않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후보들만 재투표에 참여합니다. 재투표를 통해서도 모든 위원직이 충원되지 않거나 ELL 또는 IEP 학부모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한 학교에서 CEC 대표를 한 명 이상 낼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재투표 결과가 동점이 되는 경우, 교육청 선거 절차를 대행하는 독립 기관에서 추첨을 통해 위원을 결정합니다.
6. 상기 재투표 절차를 통해서도 모든 위원직이 충원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 공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본 규정 섹션 IX.A에 정해진 절차에 의거하여 공석을 채우도록 합니다.

VI. 선출 후 조건/자격 검토

- A. 후보자의 조건부 선출 이후 그러나 이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FACE에서는 당선자가 CEC에서 봉사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FACE에서 어떤 당선자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FACE에서는 자격미달 사유와 법적 근거를 포함한 결정문을 발표할 것입니다. FACE에서 자격 없는 것으로 간주한 모든 후보자는 CEC에 대표를 보유하지 않은 학교의 다음으로 가장 높은 표를 얻은 후보자로 대체될 것입니다.
- B. 선출된 후보자가 선출 절차가 완전히 끝난 후, 그리고 선거가 실시된 해의 6월 30일이나 그 이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잃게 된다면, 최초의 투표에서 CEC에 대표를 보유하지 않은 학교의 다음으로 가장 높은 표를 얻은 후보가 조건부로 선출될 것입니다.
- C. 자격을 상실하거나 잃게 된 후보가 유일한 IEP 학부모일 경우 CEC에 대표를 보유하지 않은 학교에 소속되고 최초 선거 절차에서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은 IEP 학부모가 조건부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D. 자격을 상실하거나 잃게 된 후보가 유일한 ELL 학부모일 경우 CEC에 대표를 보유하지 않은 학교에 소속되고 최초 선거 절차에서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은 ELL 학부모가 조건부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E. 만약 본 섹션에 명시된 방법으로 후보자를 선출하였는데 동점이 되는 경우, 교육청 선거 절차를 대행하는 독립 기관에서 추첨을 통해 위원을 결정합니다.
- F. 만약 선출 자격을 갖춘 후보가 없는 경우, 본 규정 섹션 IX.A에 정해진 절차에 의거하여 의석을 채울 수 있도록 위원회에 공석이 발생하도록 남겨둡니다.

VII. 선거 시기

- A. CEC는 매 2년마다, 홀수 연도에 실시됩니다. 재투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표는 5월 둘째 화요일에 종료되어야 합니다.
- B. 선거 절차는 선거가 있는 해의 1월에 시작되며, FACE에서 CEC의 역할과 기능, 활동 및 후보 정보와 지원 및 투표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안내합니다.
- C. CEC 위원 임기는 선거 후 7월 1일부터 시작되어 2년 후 6월 30일까지 지속됩니다. 모든 CEC 위원은 임기 시작 전에 FACE에서 마련한 오리엔테이션이 참가해야 하며, 임기 2년차에 최소 1회의 추가 연수에 참가해야 합니다.

VIII. 사임

A. 학부모 위원

학부모 위원의 사임은 FACE에 서면으로 이메일 주소 cceinfo@schools.nyc.gov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임은 특정 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한, FACE에 사임 의사가 전달된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FACE가 동의하지 않는 한 사임은 철회, 취소 또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B. 보로장 임명인

보로장 임명인의 사임은 반드시 서면으로 보로장에게 보내야 하며, 사본을 FACE에 이메일 cceinfo@schools.nyc.gov로 보내십시오. 사임은 미래의 특정 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한, 보로장에게 사임 의사가 전달된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보로장이 동의하지 않는 한 사직은 철회, 취소 또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C. 학생 위원

학생 위원의 사임은 반드시 서면으로 본인을 임명한 커뮤니티 수퍼인텐던트에게 보내야 하며, 사본을 FACE에 cceinfo@schools.nyc.gov로 보내야 합니다. 사임은 특정 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한, 커뮤니티 수퍼인텐던트에게 사임 의사가 전달된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커뮤니티 수퍼인텐던트가 동의하지 않는 한 사직은 철회, 취소 또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IX. 공석

A. 학부모 위원 및 보로장 임명 위원의 공석

1. 임기 중 사전에 적절하게 공지된 정기 CEC 월례 회의에 서면상의 유효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3회 불참하거나 참석을 거부한 CEC 위원은 본인의 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a. 각각의 불참과 서면으로 제공한 이유는 회의의 공식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b. 유효한 불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척의 사망 또는 친척의 장례식 참석, CEC 위원 또는 가족의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 배심원 소환을 포함한 의무적인 법원 출석, 군인의 의무, CEC 회의 불참을 피할 수 없는 직업과 관련된 문제 발생 및 기타 CEC에서 적절한 이유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 그 밖의 다른 사유는 회의 불참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CEC에 제출되고 정족수가 참석한 다음 정기 월례회의에서 CEC에 의해 승인 표결이 되었을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c. 적절한 사유 없이 3차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CEC는 정기 회의에서 공석 발생을 결의하고 FACE에 이런 상황을 통보합니다. 보로장 임명 위원의 공석이 발생한 경우, CEC에서는 보로장에도 통보합니다.
2. 75학군 할당 의석 외 학부모 위원석에 공석이 발생하면, CEC는 공개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잔여 임기 동안의 공석을 채워야 합니다.
 - a. CEC에서는 공석을 널리 알리고 지원 절차와 지원서 제출 마감일을 공고할 것입니다.
 - b. 모든 지원자는 반드시 FACE에서 CEC 공석 입후보 지원서를 받아 작성한 후 다시 FACE에 제출해야 합니다. FACE에서는 자격요건을 검토한 뒤, 유자격 후보들의 지원서 일부를 CEC에 보낼 것입니다.
 - c. 만일 공석이 현 IEP 학부모 위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나머지 CEC 위원 중에 현 IEP 학부모가 없다면, 공석 충원 후보는 현재 IEP 학부모들만 가능합니다. 만일 공석이 현 ELL 학부모 위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나머지 CEC 위원 중에 현 ELL 학부모가 없다면, 공석 충원 후보는 현재 ELL 학부모들만 가능합니다.
 - d. 커뮤니티 학교 학군의 회장 위원회 및 기타 교육 그룹은 추천을 서면으로 표명하고 충원 전 CEC와 논의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IEP 학부모 또는 ELL 학부모 공석을 충원하기 위해 IEP 학부모 또는 ELL 학부모를 선출하기 전 CEC는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 또는 뉴욕시 영어학습학생 위원회와 논의해야 합니다.
 3. 만약 후보간 동일한 표를 획득하는 결과가 나와서 60일 내에 CEC에서 이러한 학부모 공석을 충원하지 못한다면 교육감의 투표로 위원을 결정합니다. 다른 이유로 CEC가 60일 이내에 공석을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법 섹션 2590-I에 따라 CEC 공석 충원을 지시합니다.
 4. 보로장이 임명한 위원 직책에 공석이 발생하면 보로장이 남은 임기 동안 활동을 할 위원을 임명합니다. 관심 있는 지원자는 반드시 FACE에서 CEC 보로장 임명자 공석 입후보 지원서를 받아 작성한 후 다시 FACE에 제출해야 합니다. FACE에서 자격을 검토한 후 요건을 갖춘 후보의 지원서를 담당 보로장실로 보낼 것입니다. 최종 임명은 보로장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5. 75학군 할당 의석에 공석이 발생하면, 아직 임기가 남은 해당 의석은 75학군장 위원회 정기 회의에서 충원합니다. 75 학군 회장 위원회에서는 공석이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후보 지원서는 섹션 IX.A.2.b.에서 정한 바와 같이 FACE로 접수합니다. 이 때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해당 CEC의 지리적 학군 내 위치한 75학군 학교나 프로그램 학생의 부모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B. 학생 위원 공석

학생 위원 공석이 발생할 경우 커뮤니티 수퍼인텐던트는 남은 임기 동안 활동할 자격을 가진 학생 중 다른 12학년 학생을 임명합니다. 수퍼인텐던트는 FACE 및 CEC에 지명 내용을 통지합니다.

x. 이의제기 절차

본 규정의 준수에 관한 이의제기는 반드시 위반 사항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한지 5일 내에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이의제기를 하게 된 특정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xi. 기술적 지원

FACE에서 본 규정에 포함된 절차의 실행에 관해 총괄하며 필요하다면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xii. 문의처

본 규정 관련 문의:

Office of 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 Room 409

New York, NY 10007

전화: 212-374-4118

이메일: CCECinfo@schools.nyc.gov